

# 중국 민사집행제도에 대한 이해

An Understanding of Civil Enforcement System in China

이 영 수\*

Lee, Young Soo

---

## 차 례

---

- |                                |                |
|--------------------------------|----------------|
| I. 서론                          | 2. 집행의 객체      |
| II. 중국 민사집행제도의 근거 법령 및 민사 집행근거 | IV. 중국 민사집행 절차 |
| 1. 중국 민사집행제도의 근거 법령            | V. 결 론         |
| 2. 중국의 민사집행근거                  | <abstract>     |
| III. 중국 민사집행의 주체와 객체           | <참고문헌>         |
| 1. 집행기관과 집행당사자                 |                |

---

## ABSTRACT

---

### 1. CONTENTS

#### (1) RESEARCH OBJECTIVES

Due to increasing numbers of the business and individual migrations toward China, consequently there are growing interests on the Chinese civil enforcement system in order to protect own profits through various civil disputes.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basis of regal and civil enforcement regulations between two countries, specifically focusing on the overall procedures and related subjects.

#### (2) RESEARCH METHOD

To research the notable features of Civil Enforcement System in China, I did literature and field survey. To make clear the differences of two countries, I used the way of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ivil enforcement systems between China and Korea.

#### (3) RESEARCH RESULTS

The civil enforcement system in China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Korea's in several respects.

---

\*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부교수

▷ 접수일(2019년 5월 3일), 수정일(1차 : 2019년 5월 17일), 게재확정일(2019년 5월 23일)

## 2. RESULT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into following facts: Firstly, the civil proceedings normally does not involve the state or government level interventions in Korea, but China adopts a principle of state or government intervention on the civil litigations deeply. Secondly, unlike Korea, China does not have a common principle law for the civil enforcement, but they follow and depend on a unique civil enforcement prescriptions, which is not actually related to the civil law. Thirdly, according to the chinese civil enforcement system, there is a unified and soul executive organization exist. Also China's civil enforcement process follows a Transfer Enforcement System, which allows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Another unique differences regarding the chinese civil enforcement procedure is that it allows an execution collateral and reconciliation systems, but double attachments are not allowed. Seventh, China does not have the process of granting execution clauses, objection system for granting execution clause and immediate complaints or appeals. Finally, China has a procedure for trial supervision for the judicial reviews.

## 3. KEY WORDS

- Civil Enforcement System, Civil Enforcement Procedure, Civil Procedure Law, Judicial Interpretation, Executive Organization, Transfer Enforcement System, Execution Collateral System, Execution Reconciliation System.

---

## 국문초록

---

최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개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중국 내 각종 민사 분쟁도 증가 추세다. 이에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의 민사집행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과 한국의 민사집행제도는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 민사집행제도의 근거법령 및 민사집행의 근거, 중국 민사집행의 주체와 객체, 중국 민사집행의 절차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중국 민사집행제도가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어떤 절차를 통해 집행되고 있는지, 중국과 한국의 민사집행의 차이는 무엇인지 분석함으로써 중국 민사집행제도의 특징을 규명하였다.

한국과 다른 중국 민사집행제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사소송에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중국은 민사소송에 국가가 깊숙이 개입하는 국가개입주의가 원칙이다. 둘째, 한국과 달리 중국은 민사집행에 대한 단행법이 존재하지 않고, 중국민사소송법과 관련 법령에 민사집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련 법령이 아니라 '사법해석'이라는 중국 특유의 제도에 의존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집행기관은 집행국이며 일원체제를 채용하고 있다. 넷째, 중국의 민사집행절차는 이송집행제도를 두고 있다. 다섯째, 중국은 한국과 달리 이송 압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섯째, 중국은 집행문 부여절차, 청구이의의 소(訴) 제도, 즉시항고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일곱째, 중국은 심판감독절차를 두고 있다. 끝으로, 중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로 집행담보제도, 집행화해제도 등이 있다

- 주제어 : 민사집행제도, 민사집행 절차, 중국민사소송법, 사법해석, 집행국, 이송집행제도(移送執行制度), 집행담보제도, 집행화해제도
-

## I. 서론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당사자들은 보통 자력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자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이란 국가기관에 소(訴)를 제기하여 국가의 강제력을 빌어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그런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일정한 급부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승소판결을 얻는 데 들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판결을 받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판결절차 못지않게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보전소송절차와 강제집행절차가 중요하다. “천하에 사랑할 만한 명문의 판결이라도 집행에 의하여 그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라는 말처럼 강제집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sup>1)</sup> 만약 판결내용에 따른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거나, 채권자, 담보권자가 자력으로 채권을 회수하고자 한다면 사회는 큰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자력구제를 법으로 금지하고, 국가구제를 원칙으로 한다. ‘민사집행절차’는 판결내용에 따른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의무를 국가공권력을 통해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절차이다. 강제집행은 민사집행의 일종이다. 따라서 민사집행은 강제집행보다는 넓은 의미를 갖는다. 즉, 민사집행은 강제집행에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유치권에 의한 경매, 민법·상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를 합친 개념이다. 거기에다 보전처분까지 포함된 것이 넓은 의미의 민사집행이다.

개혁개방 후 중국에서도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의 법의식이 높아지면서 민사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민사집행제도에 관한 기존연구는 근거 법령 및 법률 취지를 소개하는 법학자들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기존연구는 중국의 민사집행이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 진행되며 한국과 다른 중국적 특징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런데 중국의 민사집행제도는 한국의 민사집행제도와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현재 중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과 개인들은 재산적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업과 개인이 각종 민사 분쟁을 통해 이익을 보호하려 하므로 중국 민사집행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 민사집행제도의 근거 법령 및 민사집행의 근거, 중국 민사집행의 주체와 객체, 중국 민사집행의 절차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국 민사집행제도가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어떤 절차를 통해 집행되고 있는지, 중국과 한국의 민사집행의 차이는 무엇인지 분석함으로써, 중국 민사집행제도의 특징을 설명하려 한다.

## II. 중국 민사집행제도의 근거 법령 및 민사집행근거

### 1. 중국 민사집행제도의 근거 법령

중국의 법제도는 한국 법제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해의 편의를 위해 중국 민사집행제도의 근거법<sup>2)</sup>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중국의 민사집행의 법원(法源)은 매우 다양하며 때로는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즉, 중국에서는 민사소송법 이외에 많은 사법해석이 공포되어 법원을 형성하고 있으며 사법해석에 해당하는 것 이외에도 상급기관에서 내리는 수많은 문건 등이 새로운 해석이나 문건으로 폐지될 때까지 모두 법원(法源)으로 기능한다.<sup>3)</sup> 따라서 민사집행제도의 근거법령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 관련 단행법규, 사법해석과 상급기관이 내린 문건 등으로 구성된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1) 사법연수원출판부, 민사집행법, 사법연수원 출판부, 2017, p.3.

2) 민사집행법의 법규연혁(沿革)

3) 손한기, 중국민사집행절차개관, 민사소송, 12(1),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8. 05, p.506.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민사집행제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근거법령은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이하 중국민사소송법)」이다. 그런데 중국의 민사집행절차는 한국과 달리 단행법으로 민사집행법이 존재하지 않고, 중국민사소송법 제3편에 민사집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중국민사소송법은 1991년 4월 9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의결하여 제정하였고, 2007년 10월 28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의 중국민사소송법의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1차 개정하였다. 그 후 2012년 8월 31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의 중국민사소송법의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2차 개정하였고, 2017년 6월 27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의 중국민사소송법과 중국행정소송법의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3차 개정을 하였다.<sup>4)</sup> 현행 중국민사소송법은 총4편 27장 284조로 구성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민사소송법 중 민사집행에 관한 내용은 제3편 집행절차에 규정되어 있다. 중국민사소송법 제3편은 원칙으로서 민사집행 절차의 기본적인 사항, 당사자와 기타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3편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19장은 ‘일반규정’, 제20장은 ‘집행의 신청과 이송’, 제21장은 ‘집행조치’, 제22장은 ‘집행중지와 종결’이다. 제3편은 제224조부터 제258조까지 총3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중국민사소송법 제9장 ‘재산보전과 우선집행’, 제10장 ‘민사소송 방해에 대한 강제조치’, 제27장 ‘중재’ 또한 민사집행과 관련이 있는 조문이다.

둘째, 중국 민사집행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으로 단행법규 중 ‘민사집행에 대한 규정’이 있다. 각 단행법규의 민사집행에 관련된 규정은 민사집행절차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매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경매법(이하 중국경매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6년 7월 5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국경매법은 2004년 8월 28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제1차 개정을 하였고, 2015년 4월 24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제2차 개정을 하였다.<sup>5)</sup> 제1장 총칙, 제2장 경매목적물, 제3장 경매당사자, 제4장 경매절차, 제5장 법률적 책임, 제6장 부칙으로 구성된 중국경매법은 총69개의 조문을 갖고 있다.<sup>6)</sup> 또 다른 민사집행의 법적 근거가 되는 단행법규의 예로는 담보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이하 중국담보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1995년 6월 30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국담보법은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보증, 제3장 저당, 제4장 질권, 제5장 유치, 제6장 보증금, 제7장 부칙으로 구성된 중국담보법은 총76개의 조문을 갖고 있다.

셋째, 중국 민사집행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으로 ‘사법해석’이 있다. 사법해석이란 중국 특유의 법률개념으로 재판과정에서 법령을 적용하기 위하여 유권해석을 사전에 하는 것이다. 사법해석은 국가최고사법기관이 구체적인 안건의 해결을 위한 법률적용에 있어 관련 법률을 구속력 있게 해석 또는 설명하는 것이다. 사법해석에는 검찰해석과 심판해석이 포함된다.<sup>7)</sup> 한국과 달리 중국은 2심제를 취하고 있어 최고

4) 中華人民共和國民事訴訟法, 全國人大:인터넷 검색일(2018년 10월 14일).

5) 根据2015年4月24日第十二屆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第十四次會議《中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關於修改〈中華人民共和國電力法〉等六部法律的決定》第二次修正

6) 이영수, 중국부동산경매제도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한국주거환경학회, 2016, 제14권 제4호(통권 제34호), p.340.

7) 李林, 「立法理論與制度」, 中國法制出版社, 2005, p.87.

인민법원의 판례 형성이 쉽지 않고 법률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사법해석은 실무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의 법원(法源) 중 사법해석의 효력은 법률, 입법해석 다음에 위치한다. 사법해석은 법률을 근거로 해야 하며, 법률규정에 위배되거나 넘어설 수 없다. 중국법상의 사법해석은 비록 해석이라는 호칭이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단행 법률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 최고인민법원이 제정하는 하나의 ‘준법률’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2015년 시행된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의 적용에 관한 해석」은 552개 조문에 이르고, 매우 상세하게 민사소송법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sup>8)</sup> 2017년 개정된 중국민사소송법이 불과 284개 조문 수를 갖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그 조문의 개수는 2배에 달하고, 그 중요성은 민사소송법에 필적할 만큼 중요하다.

민사집행과 관련된 사법해석은 크게 3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민사소송법 전체를 규율하는 사법해석이 있다. 예를 들어, 최고인민법원이 내린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적용의 약간 문제에 관한 의견」(法發[1992]22호, 1992년 7월 공포)과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法釋[2015] 5호, 2015년 2월 4일 시행)이 이에 해당한다.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적용의 약간 문제에 관한 의견」은 총 320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사법해석이다. 이 사법해석은 관할, 소송참가인, 증거, 기간과 송달, 조정, 재산보전과 우선집행, 민사소송방해에 대한 강제조치, 소송비용, 제1심 보통절차, 간이절차, 제2심 절차, 특별절차, 심판감독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기업법인과산채무이행절차, 집행절차, 섭외민사소송절차의 특별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어 민사집행과 관련해서 중요

한 법원(法源)으로 기능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도 민사소송법 전체를 규율하고 있다. 주요한 내용은 관할, 회피, 소송참가인, 증거, 기간과 송달, 조정, 보전과 우선집행, 민사소송 방해 행위에 대한 강제조치, 소송비용, 제1심 보통절차, 간이절차, 간이절차 중 소액소송, 공익소송, 제3자 취소의 소, 집행이의의 소, 제2심 절차, 특별절차, 심판감독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집행절차, 섭외민사소송절차의 특별규정, 부칙으로 구성되어 조문의 수는 총 552개에 달한다.

둘째, 민사집행제도 전반을 규율하는 사법해석이 있다. 예컨대 최고인민법원이 내린 「인민법원 집행업무에 관한 약간 문제의 규정(시행)」(法釋[1998] 15호, 1998년 7월 18일 시행)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집행절차의 적용에 관한 약간문제에 대한 해석」(法釋[2008] 13호, 2009년 1월 1일 시행)이 있다. 「인민법원 집행업무에 관한 약간 문제의 규정」은 중재재결, 공증증서, 특허배척문서 등의 집행관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과 동시에 관할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의 처리, 상급인민법원에 서면으로 지시를 요청한 후 집행을 하는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집행난(執行難)을 해결하고 집행과정 중의 지방보호주의를 극복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다.<sup>9)</sup> 이 문건은 총 13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집행절차의 적용에 관한 약간문제에 대한 해석」은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 민사소송법과 인민법원의 집행 실무에 결부시켜 집행절차에서의 법률 적용상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해석을 내리고 있으며, 총 4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민사집행제도의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한 사법해석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민사소송법 제244조를 보완해서 채무자의 각종재산에

8) 민사소송법 해석 적용에 관해서는 다음 참조. 最高人民法院關於適用〈中華人民共和國民事訴訟法〉的解釋(2014年 12月18日 最高人民法院審判委員會 1636次會議通過 法釋[2015] 5号).

9) 전대규, 중국민사소송법, 박영사, 2008, p.538. 민사 판결 집행과정에서 집행난에 관한 구체적 분석은 다음 참조. 김정애, “중국 민사집행권 행사 관련 법제도적 지원에 관한 소고,” 東北亞法研究, 第12卷 第1號 (2018년 5월), pp. 145-170.

대한 압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인민법원 민사집행 중 재산의 봉인, 압류, 동결 관련 결정」(法釋[2004] 15호, 2005년 1월1일 시행)이 있다. 최고인민법원이 내린 「인민법원 민사집행 중 재산의 봉인, 압류, 동결 관련 결정」은 민사 집행과정에서 봉인, 압류, 동결조치를 규범화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민법원 민사집행 실천경험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고, 총3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사법해석이 민사집행을 규율하고 있다.

중국의 민사집행과 관련된 중요한 사법해석 중에는 상급기관인 최고인민법원이 내린 문건들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최고인민법원이 내린 「인민법원 민사집행 중 재산의 경매와 환매에 관한 규정」(法釋[2004]16호, 2005년 1월1일 시행)은 민사집행 중 재산 경매와 환매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사법해석으로 총3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최고인민법원이 내린 「위탁집행에 관한 약관문제의 규정」(法釋[2011] 11호, 2011년 5월 16일 시행)<sup>10)</sup>은 민사집행 중 위탁집행업무를 규범화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민사소송법과 인민법원 민사집행 실천경험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고, 총1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민사집행사건의 입안 및 종결에 관한 약관 문제의 통지」(法發[2014]26호, 2015년 1월 1일 시행)는 민사집행사건의 입안 및 종결의 표준과 규범집행행위의 표준을 통일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총3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최고인민법원이 내린 「집행이의 및 집행재심 사건처리에 관한 약관 의견」(法釋[2015]10호, 2015년 5월 5일 시행)이 있다. 이 문건은 인민법원의 집행이의 및 집행재심 사건 처리를 규율하고 당사자, 이해관계자 및 외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사소송법 등 법률규정에

의거하고 인민법원의 집행업무 실정과 결부시켜 제정되었고, 총3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상급기관이 내린 수많은 문건들은 폐지될 때까지 모두 법원(法源)으로 기능한다. 참고로 사법해석은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하는 것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사법부 등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사법해석과 유사한 규범성 문건을 내리기도 한다.<sup>11)</sup>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중국의 민사집행법의 법원은 단행법으로 민사집행법을 갖고 있는 한국과 달리 중국민사소송법 제3편이다. 중국경매법, 중국담보법 등의 단행법은 보충적인 법원이 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민사집행법의 법원이 한국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다양한 분야를 다루면서도 조문수가 총35개에 불과한 중국민사소송법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법해석이 널리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행 중국 민사집행법이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정식 조문이 적고 가변적이며 효력이 법률보다 떨어지는 사법해석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행법으로 통일적인 '민사집행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이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 단행법으로 '민사집행법'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민사집행 법원(法源)은 2002년 6월말까지 구(舊)민사소송법 제7편이었다. 그런데 구 민사소송법이 전문개정 되면서 민사집행법(2002.1.26. 법률 제6627호)이라는 단행 법률로 분리·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2. 중국의 민사집행근거

중국의 민사 '집행근거(執行根據, 한국의 집행권원에 해당)'란 채권자의 채권존재의 범위를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집행기구에 강제집행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문서이다. 집행근거는 사법상의 일정한 급부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으로 그 청구권

10) 이영수, 전제논문, pp.339-340.

11) 손한기, 중국민사소송법의 원리와 해석, 홍문사, 2014, p.25.

을 실현할 수 있는 법률상 집행력을 인정한 공문서를 말한다. 집행근거는 강제집행을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초이다. 집행근거에 의하여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및 객관적 범위가 정해진다.<sup>12)</sup> 중국의 집행근거가 되는 법률문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원의 판결서이다. 민사판결이란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에 대한 심리를 통하여 사실을 명확히 하고, 사실에 의거하고 법률에 근거하여 쌍방 당사자 간의 실제문제에 대하여 내리는 결론성의 판정이다. 법원의 판결서는 판결의 결과와 그 판결을 내리는 이유를 적시한 법률문서로 집행근거가 되는 문서이다. 중국민사소송법에 의하면 판결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즉, ① 사건의 경위, 소송청구, 쟁의 사실과 이유, ② 판결이 인정한 사실 및 이유와 적용한 법률근거, ③ 판결결과와 소송비용의 부담, ④ 상소기간과 상소법원 등이다.<sup>13)</sup> 민사판결서뿐만 아니라 재산내용이 포함된 형사 판결서 역시 집행근거가 되는 법률문서이다.

둘째, 법원의 민사재정서이다. 민사소송법상 재정(裁定)이란 인민법원이 소송절차 중의 각종 절차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내리는 기속력 있는 판단이다. 민사소송법상 재정은 아래의 범위에 적용한다. 즉, ① 소의 불수리, ② 관할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③ 소의 각하, ④ 보전과 우선집행, ⑤ 소취하의 허가 또는 불허가, ⑥ 소송의 중지 또는 종결, ⑦ 판결서 오류의 보정, ⑧ 집행의 중지 또는 종결, ⑨ 중재 재결의 취소 또는 집행불허, ⑩ 공증기관이 강제집행의 효력을 부여한 채권문서의 집행 불허, ⑪ 기타 재정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다.<sup>14)</sup> 재정서에는 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의 인장을 날인한다. 구두로 재정한 경우 조서에 기재한다. 재정서란 인민법원이 민사·형사소송절차 중의 절차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내리는 기속력 있는 판단을 내린 문건으로 집행근거가 되는 법률문서이다. 또한 재산내용이 포함된 형사 재정서 역시 집행근거가 된다.

셋째, 법원의 조정서이다. 중국민사소송법 총칙 제9조는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자유의사와 합법원칙에 따라 조정(調停)<sup>15)</sup>을 진행해야 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즉시 판결하여야 한다.”<sup>16)</sup>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합의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제3자인 조정인이 개입하는 분쟁해결 방식이다. 조정이 성립돼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할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정서에는 소송청구, 사건의 사실 및 조정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조정서는 심판원, 서기가 서명하고 인민법원의 인장을 날인하여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한다. 조정서는 당사자가 서명·수령(簽收)한 후에는 즉시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sup>17)</sup> 조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일방이 이행을 거절할 경우 다른 일방은 이 조정서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sup>18)</sup>

넷째, 법원의 지급명령서이다. 중국민사소송법 제214조에 의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 유가증권의 급부를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른 채무분쟁이 없고,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있는 경우 관할권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지급명령(支付令)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독촉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이다. 지급명령서는 채무와 관련한

12) 김홍엽, 민사집행법, 박영사, 2017, p.48.

13) 중국민사소송법 제152조. 참고로 본고는 2012년 개정된 중국민사소송법을 인용하고 있다.

14) 중국민사소송법 제154조.

15) 중국에서는 ‘調解’라 한다.

16) 중국민사소송법 제9조.(第九條 人民法院審理民事案件, 應當根據自願和合法的原則進行調解; 調解不成的, 應當及時判決.)

17) 중국민사소송법 제97조.

18) 최고인민법원 「민사사건 심리 간이절차 적용에 관한 약간 규정」 제15조(調解協議生效後一方拒不履行的, 另一方可以持民事調解書申請強制執行).

독촉 내용을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발송하는 문서로 집행근거가 되는 법률문서이다.

다섯째, 중재판정서이다. 중재판정서란 민사관련 분쟁에 대해 당사자가 중재법에 따라 설치된 중재기구의 재결(裁決)을 받은 것이다. 중재판정서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일방 당사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타일방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의 유관규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은 마땅히 이를 집행해야 한다.<sup>19)</sup>

여섯째, 공증기관이 작성한 강제집행효력이 있는 채권문서이다.<sup>20)</sup> 공증기관이란 중국 공증법에 따라 설립하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공증기능을 행사하고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증명기관이다.<sup>21)</sup> 이러한 공증기관이 작성한 문서에 집행승낙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행근거가 된다.<sup>22)</sup>

한국의 경우 민사집행의 집행권원<sup>23)</sup>이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이다. 즉, 확정된 중국판결(제24조), 가집행선고 있는 중국판결(제24조),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에 대한 집행판결(제26조), 소송상화해조서와 제소전화해조서(제56조),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제56조), 확정된 지급명령(제56조), 가압류·가처분 명령(제291조, 제301조) 등이다.

둘째,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 외의 법률에 규정된 집행권원이다.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중재법 제37조), 조정조서(민사조정법 제29조), 당사자가 예납하지 아니한 비용의 수봉

결정, 소송상의 구조와 구조의 취소에 따른 비용 추심의 결정(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 비송사건절차의 비용의 재판(비송사건절차법 제29조),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또는 가납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형사소송법 제477조) 등이다.

집행근거가 되는 것은 법규의 형식과 의견 상으로는 한·중 양국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민사집행을 위해서는 한국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필요한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중국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접 집행근거를 집행기관에 넘겨 집행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절차의 집행이 한국보다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가처분 제도가 법률상 존재하기는 하지만 중국의 경우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활용되지 않는다. 또한 가압류의 경우는 가처분보다 용이하기는 하지만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청구금액에 필적하는 현금담보가 원칙이다.<sup>24)</sup> 중국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이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합법적 권익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기 전(前) 또는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피보전재산의 소재지, 피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인민법원의 보전조치를 취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는 신청을 기각한다.”<sup>25)</sup>고 규정되어 있어 한국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62조.

20) 중국민사소송법 제238조,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공증절차 규칙」,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한 공증기관의 채권문서 집행 관련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사법부의 연합통지」 등에 규정하고 있다.

21)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6조.

22)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37조.

23)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채무명’이라고 하였다.

24) 변용재, 중국 기업 관련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2:우리나라와 차이점 많은 소송, Chindia Journal, 포스코경영연구원, 2011.6., p.56.

25) 중국민사소송법 제101조 제2항



### III. 중국 민사집행의 주체와 객체

#### 1. 집행기관과 집행당사자

집행기관이란 국가의 집행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 즉 민사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집행기관의 구성에 대한 입법례는 단일기관에 집행권을 집중시키는 일원적 구성과 병립하는 2종의 기관에 집행권한을 분담시키는 다원적 구성이 있다.<sup>26)</sup> 중국의 집행기관은 집행국이며 일원체제를 채용하고 있다. 집행국은 모든 인민법원에 두고, 법원의 지배하에 민사집행을 시행하고 있다.<sup>27)</sup> 집행국은 한국과 달리 법원에서 독립하지 못하였고, 법원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의 법원은 기본적으로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의 4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급의 법원에 집행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기층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뿐 아니라 고급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에도 집행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고인민법원의 집행기관은 기층 인민법원의 집행기관과는 약간 다르게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처분을 취급하지 않고, 기층 인민법원의 집행업무를 감독하고 있다.<sup>28)</sup> 참고로 중국의 소송제도는 2심제가 원칙으로 되어 있다(兩審終審). 기본적으로 민사사건은 두 심급의 심리를 거쳐 종결되지만, 최고인민법원이 1심으로 심리하는 사건은 단심으로 종결된다.

중국의 모든 법원에 설치된 집행국은 집행국장, 집행법관, 집행관, 서기와 사법경찰로 구성되어 있다. 집행국장은 집행국의 장이며, 집행국의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집행법관은 법관

자격이 있는 자이며, 집행국의 직권 중 심사 및 재정사항을 처리하고 집행관을 감독한다. 집행관은 집행국장과 집행법관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조치를 집행하는 실무자이다. 서기원은 집행기록을 작성하고 집행관과 협조하여 집행사무를 처리하고 사법경찰은 집행현장 질서를 유지하고 집행업무를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한다.<sup>29)</sup> 집행국의 구성원 중 집행국장, 집행법관, 집행관, 사법경찰은 모두 광의의 국가 공무원에 속하며, 그들의 대우와 복지를 위한 자금은 국가재정에서 지출한다. 그런데 서기원 중 일부는 공무원이고, 또 다른 일부는 사회고용원으로 인민법원과 피고용인이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한 법원이 보수를 지급한다. 채권자의 집행신청은 반드시 집행기구를 설치한 인민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며, 집행국장, 집행법관, 집행관, 서기원과 사법경찰은 모두 집행사무의 일원으로서, 단독으로 또한 자기의 명의로 집행신청을 수리하지 못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sup>30)</sup>

중국과 달리 한국의 집행기관은 집행법원과 집행관으로 구성되는 이원체제를 채용하고 있다. 집행법원은 원칙으로서 지방법원의 단독체가 구성하고, 집행관은 지방법원 및 지원에 배치되어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를 행하는 독립적·단독제의 독립기관이다.<sup>31)</sup> 한국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만 집행관을 두며, 집행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법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집행관은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사무에 종사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법원에 보증금을 내야 한다.<sup>32)</sup>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26) 福永有利, 民事執行法·民事保全法(第二版), 有斐閣, 2011, p.18.

27) 중국민사소송법 제 228조.

28) 江偉 編, 民事訴訟法, 高等教育出版社, 2007, p.427.

29) 김정애, 원활한 민사집행을 위한 중국의 집행조치, 원광법학. 제31권 제2호 (2015년 6월),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06.30., p.11.

30) 肖建國 著, 孫漢琦 譯, 中國的民事執行制度, 民事訴訟, 韓國民事訴訟法學會誌. 第12卷 第2號 (2008年 11月), 韓國司法行政學會, 2008.11.30., p.444.

31) 법원조직법 제55조, 집행관법 제2조.

32) 법원조직법 제55조.

이상의 직급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sup>33)</sup> 집행관의 임기는 4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sup>34)</sup> 중국과 달리 한국의 집행관은 경력임명제와 임기제로 운영하고 있고, 집행관이 위임을 받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지 아니하고 체당금을 변제(辦濟)받고 수수료를 받는다. 집행관은 정하여진 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특별한 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sup>35)</sup>

집행절차도 소송절차처럼 당사자의 개념이 허용된다. 집행절차에서 대립하는 두 당사자를 채권자(또는 집행권리자, 집행신청인), 채무자(또는 집행의무자, 피집행인)라고 한다. 한국의 경우 집행당사자는 집행문 부여로 확정<sup>36)</sup>되나, 중국의 경우 집행문 부여절차는 없고, 집행당사자의 확정도 집행문 부여가 아니라 집행근거에 의해 확정된다. 집행근거의 효력은 집행근거에 기재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고, 인민법원도 채무자에 대하여만 집행조치를 한다. 그러나 집행과정 중 집행당사자가 사망, 합병, 분할, 양도, 청산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국민사소송법 관련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의 약간 문제에 관한 의견」<sup>37)</sup>과 「인민법원 집행업무에 관한 약간 문제의 규정(시행)」<sup>38)</sup>의 규정에 따라 변경한다.

## 2. 집행의 객체

중국 집행법상 집행의 대상은 재산 또는 행위에 한정된다.<sup>39)</sup> 민사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또는 당사자의 행위를 집행의 객체라고 한다. 첫째, 집행의 객체가 되는 재산이란 법원의 판결

서, 재정서, 조정서 등 집행권원이 적시하는 금전, 물품, 유가증권 기타 재산을 말한다. 또 유형재산뿐만 아니라 용익물권, 지식재산권 등 무형재산도 포함된다. 현재 피집행인 소유의 재산은 물론 장래 권리의 행사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재산도 포함되며, 집행의무자가 집행기간 약의로 처분한 재산도 포함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재산은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① 피집행인의 생존에 필요한 재산, ② 권총, 마약 등과 같은 유통금지물, ③ 학교와 병원 같은 사회공익을 위한 재산, ④ 시체, 묘비, 제사용품 등과 같은 집행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재산, ⑤ 금융기관의 영업장소, 인민은행이나 그 분점의 사무장소 등과 같은 집행이 경제 안정을 해하는 재산, ⑥ 외국대사관, 영사관 같은 면책특권 관련 재산 등이다.<sup>40)</sup>

중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법정압류금지재산으로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제246조(압류금지채권)등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제28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0조) 등에서도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도산절차집행의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파산채권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채무회생 제348조 제1항),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재산(채무회생 제58조 제1항 제2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채무자의 재산(채무회생 제600조 제1항 제2호)등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sup>41)</sup>

둘째, 민사집행의 근거가 되는 행위란 집행근거의 법률문서가 그 이행을 요구하는 작위 혹

33) 집행관법 제3조.

34) 집행관법 제4조 제2항.

35) 집행관법 제19조.

36) 민사집행법 제39조 참조.

37)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의 약간 문제에 관한 의견」 제271조~제274조.

38) 「인민법원 집행업무에 관한 약간 문제의 규정(시행)」 제9편 피집행 주체의 변경과 추가(제76조~제83조)

39)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의 약간 문제에 관한 의견」 제254조 제1항(強制執行的標的應當是財物或者行爲), 손한기, p.586.

40) 손한기, 전게서, pp.586~588.

41) 김홍엽, 전게서, pp.43-44.

은 부작위를 말한다. 일방당사자가 상대방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작위라 하고, 일방당사자가 상대방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부작위라 한다. 예컨대 노무에 종사하거나 금품을 인도하거나 물품을 수리하는 것 등은 작위이며, 건물을 세우지 않는다거나 경쟁을 하지 않는 것 등을 부작위라 한다.

집행의 대상이 재산과 행위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한국도 중국과 동일하다. 그러나 한·중 양국의 집행의 객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의 연원이나 정치·경제체제 상의 상이에서 비롯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중국의 경우 민사소송법상 집행의 객체에 대해 민사소송법이나 단행법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여러 사법해석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 민사집행법에 집행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집행과 동산에 대한 집행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동산에 대한 집행은 다시 유체동산에 대한 유체동산집행과 채권 그 밖의 다른 재산권에 대한 채권집행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권의 집행과 작위, 부작위,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권의 집행으로 나누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 IV. 중국 민사집행 절차

중국 민사소송의 대원칙은 국가개입주의(중국어 표현은 國家干預主義)이다. 국가개입주의란 국가가 민사집행 절차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민사소송에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을 포함한 서구 민사소송제도의 공통적인 대원칙이다. 중국 국가개

입주의의 이론적 근거는 사회주의 공유제이다. 인민의 민사적 권리는 사회주의 공유제를 기초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민의 민사적 권리 행사는 국가, 사회, 집체의 이익과 관련을 맺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민사소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민사소송에 간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론적 근거에서 국가가 민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원칙이 나오게 되었다. 민사집행과정에 대표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사항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집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인민법원이 직접 재정(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이나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민법원이 직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집행원에게 사건을 이송할 수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sup>42)</sup> 공유제를 기초로 하는 사회인 중국과 사유제를 기초로 하는 사회인 한국의 체제 차이가 양국의 민사집행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민사집행 절차의 주요한 특징 및 한국과 다른 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집행근거의 종류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한국과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집행근거의 종류에 관계없이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지방법원에서 관할한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 재정 및 형사판결, 재정(裁定) 중 재산에 관한 부분은 제1심인민법원 또는 제1심인민법원과 동급의 집행 재산소재지의 인민법원이 집행한다. 법률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이 집행하는 기타 법률문서는 피집행인의 주소지 또는 집행 재산소재지의 인민법원이 집행한다.<sup>43)</sup>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근거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지는 것이다. 한국과 달리 중국은 4급의 인민법원이 모두 1심 사건을 관할할 수 있고, 1회에 한하여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한국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

42) 추신영, 중국민사집행제도의 특징, 재산법연구, 제30권 제2호, 2013, p.122.

43) 개정 전 조문 :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재정(裁定) 및 형사판결·재정(裁定) 중의 재산부분은 제1심 인민법원이 집행한다. 중국민사소송법 제224조.

우 2심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최고인민법원이 1심으로 심리하는 사건은 단심으로 종결된다.

둘째, 중국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하면, 집행절차의 개시방식은 신청집행방식과 이송집행(移送執行)방식이 있다.<sup>44)</sup> 신청집행방식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때 채권자가 법원에 집행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송집행방식이란 판사가 직권으로 일정한 범위 내의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 법률문서를 직접 집행기구에 교부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한국과 달리 중국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을 받지 않고 직접 재판부가 집행기관에 이를 넘겨 집행할 수 있는 이송집행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집행기구는 존속부양료, 부부간부양료, 양육비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문서, 민사제재결정서, 형사부대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서, 재정서, 조정서<sup>45)</sup> 등 공공이익과 사회적 약자의 생존에 시급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문서를 가지고 이송집행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송집행은 법원이 작성한 법률문서에만 적용된다. 기타 기관이 작성하고 법원이 강제집행하는 법률문서에 대하여는 이송에 의한 집행을 적용하지 않는다.<sup>46)</sup>

셋째, 집행조치란 법원이 채무자에게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방법과 수단을 말하는 것으로 민사집행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중국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집행조치가 있다.<sup>47)</sup> 즉, ① 피집행인의 예금, 채권, 주식, 펀드 지분 등 재산상황을 조회, 압류, 동결, 이체, 매각, ② 피집행인의 수입의 압류, ③ 피집행인

의 재산의 봉인(查封), 압류, 동결, 경매, 매각, ④ 피집행인의 은닉재산 수사, ⑤ 법률문서가 교부를 지정한 재물 또는 증표의 강제교부, ⑥ 건물에서의 강제퇴거 또는 토지에서의 강제퇴출, ⑦ 재산권증서이전절차의 처리 ⑧ 판결, 재정 및 기타 법률문서가 지정한 행위의 강제집행, ⑨ 피집행인이 판결, 재정(裁定) 및 기타 법률문서가 지정하는 기간에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이자를 배를 더하여 지급, 피집행인이 판결, 재정과 기타 법률문서가 지정하는 기간에 기타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이행금을 지급, ⑩ 피집행인의 출국제한, 의무불이행정보를 신용정보시스템에 기록하거나 매체를 통하여 알리는 것 등이다.<sup>48)</sup>

넷째, 한국과 달리 중국은 이중압류를 인정하지 않는다.<sup>49)</sup> 중국에서 이중압류 금지의 원칙은 봉인(查封), 압류(扣押), 동결(凍結)<sup>50)</sup>한 물건에 대하여는 다른 법원을 포함하여 어떠한 기관도 다시 이를 봉인, 압류, 동결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sup>51)</sup> 다만 중국은 이중압류를 금지하는 대신 한국과 달리 대기압류(待期押留)제도를 두고 있다. 인민법원이 봉인, 압류, 동결한 재산에 대하여 기타 인민법원은 대기 봉인, 압류, 동결할 수 있고, 봉인, 압류, 동결을 해제하는 경우 대기 봉인, 압류, 동결 등록 선착순으로 자동 발효하도록 되어 있다.<sup>52)</sup> 중국과 달리 한국은 집행재산의 압류 면에서 이중압류를 인정하고 있다.<sup>53)</sup> 이중압류는 여러 채권자가 때를 달리하여 하는 압류로서, 압류와 압류, 또는 압류와 가

44) 중국민사소송법 제236조.

45) 「인민법원 집행업무에 관한 약관 문제의 규정(시행)」 제19조 제2항(發生法律效力的具有給付贍養費, 扶養費, 撫育費內容的法律文書, 民事制裁定決定書, 以及刑事附帶民事判決, 裁定, 調解書, 由審判庭移送執行機構執行.)

46) 전대규, 중국민사소송법, 박영사, 2008, p.549.

47) 중국민사소송법 제241조-제255조.

48) 最高人民法院關於適用〈中華人民共和國民事訴訟法〉執行程序若干問題的解釋(法釋[2008] 13号).

49)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의 약관 문제에 관한 의견」 제282조.(人民法院在執行中已依照民事訴訟法第二百二十一條, 第二百二十三條的規定對被執行人的財產查封, 凍結的, 任何單位包括其他人民法院不得重復查封, 凍結或者擅自解凍, 違者按照民事訴訟法第一百零二條的規定處理. 被執行人的財產不能滿足所有申請執行人清償要求的, 執行時可以參照民事訴訟法第二百零四條的規定處理.)

50) 중국에서는 압류를 그 대상물에 따라 봉인(查封), 압류(扣押), 동결(凍結)이라 각각 다르게 부른다. 봉인은 부동산이나 기타 이동성이 없는 물건에 주로 사용되고, 압류는 이동성이 있는 동산에 대하여 취하는 방법이고, 동결은 예금, 증권 등에 대하여 그 처분 또는 인출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51) 중국민사소송법 제103조 제2항.

52) 「인민법원 민사집행 중 재산의 봉인, 압류, 동결 관련결정」 제28조.

압류가 중복되는 경우이다.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sup>54)</sup> 채권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 그 압류의 효력도 마찬가지이다.<sup>55)</sup>

다섯째, 중국은 2012년 중국민사소송법 제2차 개정으로 소액소송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즉, 중국은 “기층인민법원 및 그의 파출법정은 중국민사소송법 제157조 제1항에 규정된 간단한 민사사건 및 그 소가(訴價)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직전 연도 취업자의 연평균 급여의 30% 이하인 사건에 대해 1심 종심(一審終審)을 시행한다.”<sup>56)</sup>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소액소송 관련 내용은 단 1개의 조항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소액소송절차를 실제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주므로 북경(北京), 하남성(河南省), 절강성(浙江省), 복건성(福建省) 등 각 지역의 고급인민법원은 자신의 지역 내에서만 적용되는 「소액소송과 관련된 업무지도의견」<sup>57)</sup>을 공포하였다. 중국과 달리 한국은 1973년에 「소액사건심판법」과 「소액사건심판규칙」을 통해 단독적인 법령의 형식으로 소액소송제도를 규정하였고 7차례의 개정을 통해 소액소송제도를 완비해왔다.

중국의 현 소액소송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① 중국민사소송법상 소액소송은 1심에서 종결되므로 당사자는 항소를 통해 사법상의 구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② 2015년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을 제정하여 절차적인 미비사항을 약간 보완하였다. 그러나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사법해석은 단편적인 절차규정에 불과하고 여전히 소액소송의 독립적인 절차규정은 갖추어지지 않았다. ③ 각 지역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는 「소액소송과 관련된 업무지도의견」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동일한 사건일지라도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게 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소액소송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당사자의 소송부담을 줄이며 급증하는 소액사건에 비해 법관의 수가 적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도 한국처럼 소액소송 집행절차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여섯째, 한국과 달리 중국은 집행문 부여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강제집행이 실제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요건은 집행근거만 있다. 중국에서 집행문 제도가 없는 이유는 심리와 집행이 분리되었다고 하나 중국의 집행국은 법원의 업무분장 기구에 불과하고 집행국의 수리절차에서 판결의 확정여부를 심사하게 되므로 집행문부여제도가 필요 없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sup>58)</sup> 이처럼 중국은 집행문 부여제도가 없기 때문에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문 부여의 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도도 두고 있지 않다. 반면에 한국은 집행문 부여절차가 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이 부기된 집행권원의 정본이 있어야 한다. 집행문이란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음과 집행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공증기관으로서 집행권원의 끝에 덧붙여 적는 공증문언을 말하며<sup>59)</sup>, 집행문이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한다.<sup>60)</sup>

일곱째, 중국은 청구이의(請求異議)의 소(訴)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학자들은 그 이유

53) 민사집행법 제87조 및 제215조.

54) 민사집행법 제235조 제1항.

55) 민사집행법 제235조 제2항.

56) 중국민사소송법 제162조.

57) 北京市高級人民法院關於适用小額訴訟程序審理民事案件若干問題的意見(2015年)；河南省高級人民法院關於适用小額訴訟程序審理民事案件若干問題的意見；浙江省高級人民法院關於适用小額訴訟程序審理民事案件相關問題的意見；福建省高級人民法院關於适用小額訴訟程序審理民事案件若干問題的指導意見(試行).

58) 손한기, 중국민사소송법의 원리와 이해, 홍문사, 2014, p.620.

59) 민사집행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60) 민사집행법 제 28조 제1항.

가 집행중지제도와 집행종결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한다.<sup>61)</sup> 중국과 달리 한국은 청구이의(請求異議)의 소(訴) 제도를 두고 있다. 청구이이의 소란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sup>62)</sup>이다. 즉, 청구권의 소멸·저지사유나 예외적으로 부존재사유를 들어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청구이이의 소는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기 때문에 이미 집행된 개개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sup>63)</sup> 한국의 경우 재판기관과 집행기관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은 오직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의존하여 집행을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이미 실체법상 소멸하는 따위의 사정이 생기면 그 집행권원은 현재에 있어서의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경우의 강제집행도 집행법상으로는 적법이지만 실체법상으로는 부당한 것이 된다. 이러한 모순을 제거하고자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를 상대로 그 청구권의 존재나 태양을 다투어서 그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수단을 인정한 것이 청구이이의 소제도이다.<sup>64)</sup>

여덟째, 한국과 달리 중국은 즉시항고제도가 없고 집행에 관한 이의제도만 두고 있다. 집행이의란 당사자, 이해관계인이 집행기관의 위법한 집행행위에 대해 집행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시정과 구제를 요구하는 제도이다. 중국 민사소송법 상 당사자, 이해관계인은 집행행위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집행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에 서면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당사자, 이해관계

인이 서면이의를 제출한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고 이의가 성립한 경우 취소 또는 시정하는 재정(裁定)을 하고, 이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기각하는 재정을 한다. 당사자, 이해관계인이 이 재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한 급 위의 인민법원에 재심의(夏議)를 신청할 수 있다.<sup>65)</sup>

중국의 재심의 제도는 즉시항고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엄격히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재심의 제도는 인민법원의 재판에 대해 제한 없이 행해진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재심의 제도는 집행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즉시항고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여 원재판에 불복한 자의 이익을 확고히 해 주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제기기간을 단기간<sup>66)</sup>으로 제한함으로써 부당하게 장기간 집행이 정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즉, 즉시항고는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지어야 할 결정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불복신청방법으로, 이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sup>67)</sup> 한국 민사집행법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sup>68)</sup>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은 할 수 없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투어야 한다.<sup>69)</sup>

61) 추신영, 전제논문, pp.134-135.

62) 민사집행법 제44조, 제57조, 제58조 제3항, 제59조 3항.

63) 대판 1971. 12. 28. 71다1008.

64) 두산백과(<http://www.doopedia.co.kr>)

65) 중국민사소송법 제225조.

66) 즉시항고기간은 민사소송법(제444조)에서는 1주일간, 형사소송법(제405조)에서는 3일간이다.

67) 민사소송법 제447조.

68)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아홉째,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매각한 후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절차를 강제경매라 한다. 중국은 강제경매를 경매기업이 진행하는 반면에 한국은 법원이 진행한다. 중국의 경매기업이란 경매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법인을 말한다. 경매기업은 경매 활동에 종사하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이다. 경매기업이 경매공고를 시작으로 매각실시와 매각허가결정, 대금납부 등을 마치고 해당법원에 대항 업무를 인계하면 법원은 등기업무만 처리한다.<sup>70)</sup> 한국은 강제경매를 민사집행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중국은 강제경매를 「중화인민공화국경매법」, 「중화인민공화국 경매관리방법」에 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경매기업 관련 내용을 「중국회사법」에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현행 부동산 경매관련 강제집행 법률은 중국민사소송법 제3편의 관련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주로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사법해석에 따르고 있다는 점도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sup>71)</sup>

열째, 한국과 달리 중국은 심판감독절차를 두고 있다. 심판감독절차는 직권주의를 취하는 중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로써 판결의 효력과 결부하여 중국의 민사소송절차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국가, 한국 및 일본 등에서는 심판감독절차가 없다. 심판감독절차는 한국의 재심절차와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주제, 대상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이 있다. 한국의 재심은 당사자만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국은 법원, 검찰, 당사자가 모두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재심을 개시하는 절차라는 의미를 둔 '심판'과 검찰이 재심의 소를

제기한다는 의미를 둔 '감독'을 뜻하는 의미에서 심판감독절차라고 한다.<sup>72)</sup> 재심제도의 취지와 세계 각국의 재심제도의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의 심판감독절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재심을 개시하도록 하고, 법원의 직권에 의한 재심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열한 번째, 중국은 한국과 다른 집행담보제도를 두고 있다. 중국 민사소송법 제231조에 의하면, "집행 중 피집행인이 인민법원에 담보를 제공하고 집행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의 일시 유예와 그 유예기한을 결정할 수 있다. 피집행인이 기한을 넘어서도 여전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피집행인의 담보재산 또는 보증인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다."<sup>73)</sup>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담보는 집행신청인의 법적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집행인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제3자가 보증인으로서 피집행인을 위해 제공한 담보에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 기한은 그 담보의 기한과 동일하지만, 집행유예 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피집행인 또는 보증인이 유예기간 중 담보재산을 이전, 은닉, 매각, 훼손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강제집행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sup>74)</sup> 인민법원이 집행유예의 기한이 만료된 후 피집행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피집행인의 재산에 직접 집행을 하거나 재정으로 보증인의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하는 경우 보증인의 보증한도 내에서 해야 한다.<sup>75)</sup>

69) 민사집행법 제16조.

70) 이영수, 전제논문, p.341.

71) 중국의 경매제도에 관해서는 다음 참조. 最高人民法院關於人民法院民事執行中拍賣、變賣財產的規定(法釋[2004]16号)第8條, 第19條, 第23條, 第27條, 第28條.

72) 김주·정영환, 개정 중국 민사소송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 심판감독절차와 집행절차를 중심으로, 人權과正義, 통권379호, 대한변호사협회, 2008, pp.159-165.

73) 중국민사소송법 제231조.

74)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의 약간 문제에 관한 의견」, 제268조. 于謙, "執行擔保之法律探討," 江蘇法制報, 2014年5月22日.

중국법상의 집행담보는 한국의 민사집행법에 정해져 있는 '담보제공'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한국 민사집행절차에서 담보 제공은 채권자가 집행을 실시하거나,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집행의 정지 내지 취소를 구하든지 집행을 면하기 위한 경우 등에 있어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sup>76)</sup> 한국의 경우 담보제공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나 중국의 담보제공은 담보제공의 요건만 갖추면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법상의 집행담보는 집행절차 진행 중 조정의 기회를 다시 부여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즉, 중국법상 집행담보는 피집행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집행신청인의 채권회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열두 번째, 중국의 경우 집행화해제도가 있다. 중국 민사소송법 제230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집행화해는 집행절차 진행 중에 집행신청인과 피집행인이 법률문서에 확정된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스스로 합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집행화해는 집행절차 진행 중 집행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집행인과의 합의를 통하여 피집행인이 스스로 합의한 내용의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집행화해는 집행절차 중에 자발적인 양 당사자의 합의이며, 그 내용은 기 효력 발생된 법률문서에서 확정된 의무의 이행주체, 목적물 및 그 액수, 이행기간과 이행방식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화해협의를 통상 서면형태로 체결되어 집행관이 그 부분을 사건 기록에 첨부하여 관리하게 되고,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 집행관은 화해협의를 내용을 사

건기록에 기재한 후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확정한다. 쌍방이 적법하게 합의한 집행화해합의서에 따라 약정된 의무가 전부 이행된 경우 사실상 기존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실익이 소멸되므로 법원은 이행완료를 확인한 후 해당 집행사건을 종결한다.<sup>77)</sup> 집행화해제도는 한국에는 없는 중국만의 독특한 제도로 민사집행에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이해의 균형을 재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국의 집행화해제도는 당사자의 처분권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중국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당사자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민사상의 권리와 소송상의 권리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sup>78)</sup> 민사집행절차에 있어 당사자 간의 실제적인 권리·의무가 유효한 법률문서로 확정된 것과 상관없이 법률은 당사자가 확정된 실제법상의 권리내용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화해는 집행절차에 있어 당사자의 사적자치를 인정하는 제도라고 볼된다.<sup>79)</sup> 이런 집행화해제도는 채권을 유연하게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중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열세 번째, 집행중지란 집행절차 개시 후 법률이 규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잠시 집행절차가 중단되는 것을 말한다. 중국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아래의 경우는 법원이 재정으로 중지한다. ① 신청인이 집행을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경우, ② 제3자가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확실한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 ③ 일방당사자인 공민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권리를 상속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것인지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 ④ 일방당사자인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소멸하고 아직 그 권리의무승계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

75)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의 약간 문제에 관한 의견」 제270조. 最高人民法院關於適用〈中華人民共和國民事訴訟法〉的解釋(2014年12月18日 最高人民法院審判委員會1636次會議通過 法釋〔2015〕5號) 제471조. 중국 집행담보제도의 특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은 다음 참조. 龍永紅, "談談執行擔保問題," 政法論叢, 1994 第1期; 徐進靜, "執行擔保與既判力主觀範圍之擴張," 法制與社會, 2009.

76) 민사집행법 제19조

77) 關於人民法院執行工作若干問題的規定(試行)(法釋〔1998〕15號) 제86조, 10조; 最高人民法院關於調整司法解釋等文件中人引用(中華人民共和國民事訴訟法)條文序號院的執決定〔2008 1216〕.

78) 중국민사소송법 제13조. 最高人民法院關於執行和解若干問題的決定(法釋〔2018〕3號).

79) 姜必新, 民事執行新制度理解與適用, 人民法院出版社, 2010, p.215.



우, ⑤ 인민법원이 집행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sup>80)</sup> 그런데 이러한 집행중지의 상황이 소멸되면 집행은 속개된다.<sup>81)</sup>

열네 번째, 집행종결이란 집행과정에서 법원이 규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집행을 진행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 즉 집행 절차를 정지시키고 이후에 다시 회복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를 집행종결이라 한다. 아래의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법원은 재정으로 집행을 종결한다. ①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한 경우, ② 집행의 근거가 된 법률문서가 취소된 경우, ③ 피집행인인 공민이 사망하고 집행할 유산도 없고 또한 의무승계인도 없는 경우, ④ 부양비, 양육비를 청구하는 사건의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⑤ 피집행인인 자연인이 생활 곤란으로 차용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고 수입이 없으며 또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⑥ 인민법원이 집행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sup>82)</sup>

끝으로 집행할 때 집행근거로 하는 법률문서가 실체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혹은 법원의 직권에 의해 집행을 정지하고, 조사를 거쳐 그 취지가 인정되면 법원은 집행종결을 다시 정해야만 한다. 원래의 집행근거가 집행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미 실시된 집행절차도 취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에서 강제집행절차는 채권자가 특정의 집행근거에 표시된 청구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은 때에 집행은 종료한다. 또한 집행종결을 재정할 때 집행화해의 합의로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는 때에도 집행은 종료한다. 인민법원이 집행종결을 할 때는 재정서를 작성하고 집행종결의 원인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집행종결의 재정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상소할 수 없다.<sup>83)</sup>

## V. 결론

중국의 민사집행제도는 한국과 비교해 볼 때 다양한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법적 차이는 한·중 양국의 법적 연원과 정치·경제·사회제도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민사집행제도의 근거법령, 민사집행근거, 집행기관, 민사집행의 절차 등에서 한국과 여러 가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 민사집행제도가 한국과 다른 주요한 중국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집행기관은 집행국이며 일원체제이다. 집행국은 모든 인민법원에 두고 있고, 법원의 지배하에 민사집행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집행기관은 집행법원과 집행관으로 구성되는 이원체제이다. 둘째, 민사집행절차에서 중국은 한국과 달리 이송집행제도를 두고 있다. 이송집행제도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지 않고 재판부가 직접 집행기관에 넘겨 집행을 진행하는 것이다. 셋째, 한국과 다른 중국 민사집행제도의 특징에 관해서는 국가개입주의, 법원의 급별 관할 문제, 이중압류를 금지, 소액소송제도, 집행에 관한 이의제도, 강제경매를 부동산경매회사에서 진행하는 것 등이 있다. 그 외에 중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로 집행담보제도, 집행화해제도가 있다.

민사집행제도는 개인 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마지막으로 개인이 의존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다.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중국도 민사 분쟁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 분쟁 사건 중 미해결사건이 엄청나게 증가하여 민사집행으로 인한 불평이나 불만이 고조되는 이른바 ‘집행난’을 겪고 있다. 최근 최고인민법원이 민사 분쟁의 집행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부처와의 협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중소도시의 경우 아직도 집행협동 시스템이 제대로 작

80) 중국민사소송법 제256조.

81) 중국민사소송법 제256조.

82) 중국민사소송법 제257조.

83) 중국 민사소송법, 제258조(中止和終結執行的裁定, 送達当事人后立即生效.): 중국 민사소송법 제154조.

동되지 않고 있다.<sup>84)</sup>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참조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집행난’과 더불어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개인투자자들이 유념해야 하는 사항은 외국 관련사건(이른바 ‘섭외사건’)의 경우 판결이 오랫동안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판결이 오랫동안 지연되면 설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어렵게 된다. 중국에서 판결의 지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중국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건처리기한이 ‘섭외사건(涉外事件)’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중국민사소송법은 “인민법원이 섭외의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기간은 사건처리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sup>85)</sup>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중국의 민사소송법에서 민사집행 관련 조문은 총35개에 불과하여 실무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이런 입법 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민사집행에 관한 사법해석을 여러 차례 공표했지만, 사법해석을 통한 입법 상 흠결 해결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법해석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재판 및 검찰업무 과정에서 법

률·법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내린 해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향후 중국도 한국처럼 민사집행법을 별도의 단행 법률로 규정하거나 별도의 단행 법률로 제정하지 않더라도 매우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현행 민사집행 관련 조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국의 많은 개인 투자자들과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고 있으나 투자자들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중국의 민사집행제도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한국의 개인투자자들과 기업의 입장에서는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민사상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민사집행제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경우 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귀중한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는 한국 개인 투자자들과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연구 결과는 중국에 투자하고 있거나 향후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한국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에게 중국 민사집행제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투자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김정애, “원활한 민사집행을 위한 중국의 집행조치”, 원광법학, 원광대학교법학연구소, 2015, 제31권제2호.  
 김정애, “중국 민사집행권 행사 관련 법제도적 지원에 관한 소고”, 동북아법연구,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8, 제12권 제1호, pp.145~170.  
 김주·정영환, “개정 중국 민사소송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 심판감독절차와 집행절차를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2008, 통권379호.  
 김홍엽, 민사집행법, 박영사, 2017.  
 변용재, “중국 기업 관련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2: 우리나라와 차이점 많은 소송”, Chindia Journal, 포스코 경영연구원, 2011.  
 이영수, “중국부동산경매제도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한국주거환경학회, 2016, 제14권 제4호, pp.337~352.  
 사법연수원출판부, 민사집행법, 사법연수원 출판부, 2017.  
 손한기, 중국민사소송법의 원리와 이해, 홍문사, 2014.  
 손한기, “중국민사집행절차개관: 개정민사소송법을 중심으로”, 민사소송,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8, 제12권제1호, pp.503~554.

84) 季衛東, “重新定位執行權”, 中國法律評論, 2017年 第3期, 法律出版社, 2017.06.

85) 중국민사소송법 제270조.(第二百七十條 人民法院審理涉外民事案件的期間, 不受本法第一百四十九條、第一百七十六條規定的限制.)

- 장송청·이진용·정규상, “중국의 민사보전제도에 관한 고찰”, 성균관법학, 성균관대학교비교법연구소, 2007, 제19권 제1호.
- 진대규, 중국민사소송법, 박영사, 2008.
- 추신영, “중국 민사집행제도의 특징”, 재산법연구, 한국재산법학회, 2013, 제30권제2호.
- 江偉 編, 民事訴訟法, 高等教育出版社, 2007.
- 姜必新, 民事執行新制度理解与适用, 人民法院出版社, 2010, p.215.
- 季衛東, “重新定位執行權,” 中國法律評論, 法律出版社, 2017, 2017年 第3期.
- 童兆洪, 民事執行權研究, 法律出版社, 2004.
- 譚秋桂, 民事執行法學, 北京大學出版社, 2010.
- 關於人民法院執行工作若干問題的規定(試行)(法釋(1998) 15号).
- 福永有利, 民事執行法·民事保全法(第二版), 有斐閣, 2011.
- 劉家興·潘劍鋒 主編, 民事訴訟法教程(第三判), 北京大學出版社, 2010.
- 徐進靜, “執行擔保與既判力主觀範圍之擴張”, 法制與社會, 法制與社會雜誌社, 2009.
- 嚴軍興·管曉峰 主編, 中外民事強制執行制度比較研究, 人民出版社, 2006.
- 龍永紅, “談談執行擔保問題”, 政法論叢, 法源資訊股份有限公司, 1994, 1994 第1期
- 夏蔚·譚玲, 民事強制執行研究, 中國檢察出版社, 2005.
- 肖建國 著, 孫韓琦 譯, 中國的民事執行制度, 民事訴訟, 韓國民事訴訟法學會誌, 2008, 第12卷第2號, pp.43  
3~454, 2008, 韓國司法行政學會.
- 最高人民法院關於適用〈中華人民共和國民事訴訟法〉的解釋(2014年 12月18日 最高人民法院審判委員會  
1636次會議通過 法釋[2015] 5号).
- 最高人民法院關於適用簡易程序審理民事案件的若干規定(法釋[2003] 15号).
- 最高人民法院關於適用〈中華人民共和國民事訴訟法〉執行程序若干問題的解釋(法釋[2008]13号).
- 最高人民法院關於調整司法解釋等文件中引用〈中華人民共和國民事訴訟法〉條文序號的 執決定〔2008  
1216〕.
- 最高人民法院關於人民法院民事執行中拍賣, 變賣財產的規定(法釋〔2004〕 16号) 第8條, 第19條, 第23條,  
第27條, 第28條.
- 最高人民法院關於執行和解若干問題的決定(法釋[2018] 3号).
- 最高人民法院關於執行擔保若干問題的規定(法釋[2018] 4号).